

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

※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1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직업	전화번호
	주소	

현재 소지 허가증 내용	허가된 총포 의 종류	
	발급일	
	갱신기간 만료일	
	총포 보관장소	
	번호	
	허가관청	

지난 5년간	수렵 면허장 조수포획허가 취득 장소	
	엽용 화약류 양수 및 실탄소비상황 ·사격실시 상황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체검사서 2. 사진(가로 2.5cm, 세로 3cm) 3. 총포 소지 허가증 4.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(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6.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2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신체검사서는 공기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·산업용총 및 구멍줄발사총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며, 가스발사총·산업용 타정총의 경우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.
-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사격경기용 총포: 사격선수확인증
 - 나. 수렵용 총포: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
 - 다. 유해조수구제용 총포: 제1종 수렵면허증,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
 - 라.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: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

처리절차

